

신한은행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설명서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1

- 본 설명서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판매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편입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개별 상품의 약관, 상품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집합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서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본 설명서를 포함한 모든 계약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정형 상품(초저위험)」, 포트폴리오의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적극투자형 상품(고위험)」, 포트폴리오의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작성일	사전지정운용방법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직원 성명	(서명/날인)
-----------	--	-------	---------

상품명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1호		
은행이 부여한 위험등급	3등급(중위험)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개별 구성상품 위험등급을 가중평균한 위험등급과 편입자산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적용
적합 고객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고객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1.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개별 구성상품의 적용 위험등급	1등급 (초고위험)	2등급 (고위험)		3등급 (중위험)	4등급 (저위험)	5등급 (초저위험)
투자설명서상 펀드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음)	2등급 (높음)	3등급 (다소 높음)	4등급 (보통)	5등급 (낮음)	6등급 (매우 낮음)
원리금보장상품	-	-		-	원리금보장 ELB, 저축은행 예금	은행 예·적금, 국고채 등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신한은행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 사항
			개별 상품 가중평균 등급	가중평균 등급 산출 예시	
1등급	초고위험	공격투자형	1 ~ 1.8 등급	1등급 적용펀드 50% +2등급 적용펀드 50% = 1.5등급	위험선호도가(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u>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u>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고위험	적극투자형	1.9 ~ 2.6 등급	2등급 적용펀드 50% +3등급 적용펀드 50% = 2.5등급	투자원금의 보전보다 <u>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u>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중위험	위험중립형	2.7 ~ 3.4 등급	2등급 적용펀드 40% +3등급 적용펀드 40% +5등급 은행예금 20% = 3.0등급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u>일정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u>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저위험	안정추구형	3.5 ~ 4.2 등급	2등급 적용펀드 20% +3등급 적용펀드 20% +5등급 은행예금 60% = 4.0등급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u>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u>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초저위험	안정형	4.3 ~ 5 등급	4등급 ELB 20% +5등급 은행예금 40% +5등급 은행예금 40% = 4.8등급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u>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u>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구성상품 상세 내용

[상품 구성과 내용]

* 작성기준일 : 2025.06.15

상품명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1호	고용노동부 승인번호	2022 - 088호
위험등급	3등급(중위험)	승인 날짜	2022년 11월 02일
상품특징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반영하여 정기에금에 40%, 펀드에 60% 투자하는 상품으로 장기투자 목적에 적합하게 글로벌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시장상황에 적합한 자산배분 조정으로 위험을 관리하며 효율적 운용으로 장기 수익을 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성상품별 투자전략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상품	상품명	비중	위험도	예금자보호 여부
	우리은행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3년제)	40%	원리금보장상품 (초저위험)	대상
	신한마음편한TDF2035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종류 C-O	30%	2등급 (고위험)	비대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 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 O	30%	2등급 (고위험)	비대상
보 수	연 0.3744% (구성 상품 합성총보수의 가중평균치로, 포트폴리오 자체의 보수는 발생하지 않음)			
가입금액	1천원 이상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내 원리금보장상품 안내 1 (비중 40%)

상품명	우리은행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3년제)
보 수	없음
적용이자율	예금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개별 상품별 이자율 적용
분할해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중도해지이율	특별중도해지	디폴트옵션형 일반중도해지
	-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가산금리 포함)을 적용한다.	① 보유기간 32개월 미만 - 약정이율 * 80% ② 보유기간 32개월 이상 - 약정이율 * 90% ※ 약정이율: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상세내역은 상품설명서 참고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내 집합투자상품 안내 2 (비중 30%)

상품명	신한마음편한TDF203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O(퇴직연금-디폴트옵션)
위험등급	2등급 (고위험)
합성 총보수	연 0.548%
주요투자대상	글로벌 주식, 채권 등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내 집합투자상품 안내 3 (비중 30%)

상품명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O(퇴직연금-디폴트옵션)
위험등급	2등급 (고위험)
합성 총보수	연 0.70%
주요투자대상	글로벌 주식, 채권 등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유의 사항

유의 사항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용 될 경우 가입자가 운용하고 있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도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금융시장 상황 및 각 구성상품의 위험등급 변경 또는 가치변동 등으로 인하여 구성 상품의 변경 또는 비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구성 상품 또는 비중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구성 상품 또는 비중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입자에게 변경 사실 등을 통지하고, 변경 승인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변경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이전하여 운용하게 되며, 이를 희망하지 않는 가입자는 스스로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대상 금액(신규 입금 또는 만기도래금액 등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경우)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은 현금성대기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

3.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상품 특징	•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고객이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디폴트옵션 상품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입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자산한도 규제(70%)가 적용되지 않아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용될 경우 가입자의 전체 퇴직연금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는 고객은 언제든지 스스로 선정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정형 상품(초저위험)」 포트폴리오의 경우 물가 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적극투자형 상품(고위험)」 포트폴리오의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3에서 정의하는 「 투자성 상품 」에 해당합니다.
예금성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같은 법 제3조1에서 정의하는 「예금성 상품(예·적금)」과는 아래와 같이 구별됩니다. ① (원금비보장)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본손실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② (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선취수수료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③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고객님의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④ (해지시 불이익) 집합투자증권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시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므로 투자원본 보다 작아질 수 도 있으며 환매수수료가 있는 경우 부담하게 됩니다.

4. 민원 • 상담이 빈번하여 속지가 필요한 사항

Q1 디폴트옵션 상품을 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A1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 시 상품을 구성하는 집합투자상품(펀드)의 비용은 발생하나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구성하는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Q2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면 기존 상품 만기일에 바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는건가요?

A2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든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이 2주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 을 통지 받게 됩니다. 통지 후 2주가 지났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신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Q3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자동재예치는 어떻게 되나요?

A3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는 불가합니다. 다만, 운영 여건 마련을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2023년7월11일까지)은 제한적으로 재예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반면,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이 혼합된 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한 경우 편입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동재예치가 허용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만기 도래 시 가입자통지 및 대기기간 등 Q2번 적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Q4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후 부담금을 납입하면 바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나요?

A4 최초 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입자통지와 2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이후에 납입하시는 부담금은 별도의 가입자통지와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만약 최초 부담금이 아직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지 않은 상태(2주간의 대기기간 중)에서 2회차 부담금이 납입될 경우, 가입자통지는 생략하고 최초 부담금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는 시점에서 2회차 부담금도 함께 운용됩니다.

Q5 펀드로만 투자하고 있던 기존 가입자도 디폴트옵션 상품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나요?

A5 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은 기존 적립금의 운용방법과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적립금의 전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기존 가입자도 예외 없이 디폴트옵션 상품을 미리 선정해야 합니다.

Q6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모든 적립금을 투자한 경우에도 디폴트옵션 상품이 적용되나요?

A6 만기가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100% 투자한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서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은 디폴트옵션 상품이 적용됩니다.

Q7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을 더 이상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지 않기 위한 방법?(Opt-Out)

A7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운용하지 않기 위해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통해 옵트아웃(Opt-Out)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옵트아웃은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해둔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고 다른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8 3개 상품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품에서 가입자가 3개 상품을 각각 별도로 운용지시(매수/매도) 할 수 있나요?

A8 포트폴리오형 디폴트옵션 상품은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므로,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해체하고 그 안에 구성된 개별 상품을 낱개로 보유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5. 투자자 권리보호 안내

구분	내용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취소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	디폴트옵션 상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아래 사항을 즉시 통지 받습니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해지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을 포함한 3가지 이상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은 해당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되며,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통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과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과,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가입자에게 제공 합니다.
청약철회권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주의] 모집기간이 있는 상품은 설정일 전 영업일 17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대기시간 및 전산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외화로 투자되는 상품은 15시]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주1)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위법계약 해지요구서와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기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단, 계약종료 시 행사불가)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주1) 가.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나.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18조 제2항) 다.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 (제19조 제1항·제3항) 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제20조 제1항) 마.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제21조)
자료열람요구권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 범위가 기재된 자료열람요구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은 이 자료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위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는 5년) 해당 보관기간 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퇴직연금 고객상담센터(1577-4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신한은행 고객센터 1577-4114(평일 오전9시~오후 6시 / 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부탁드립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상품 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수수료 등에 관한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의 권유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